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김나영·조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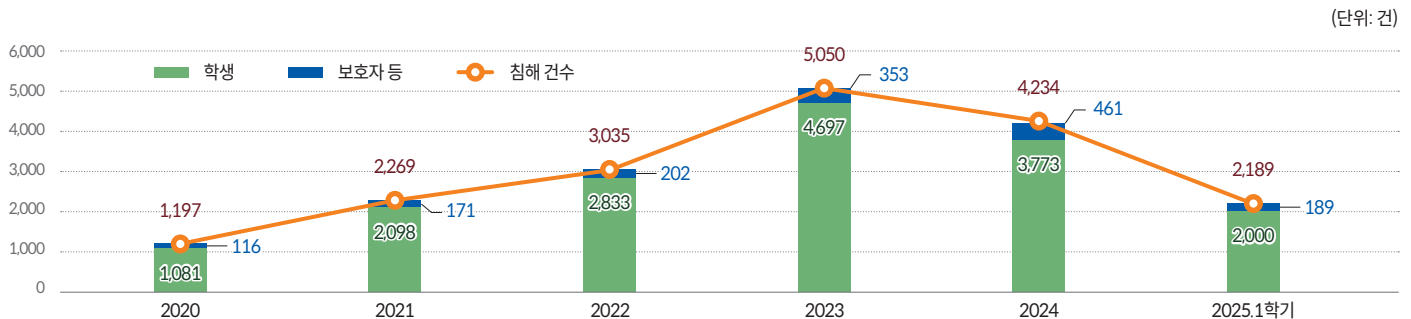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 이 개정·시행되었지만,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하고, 교육현장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보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 교권 보호 5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유형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4,234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2025년 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189건이었다. 교육활동 침해주체는 2020년 학생이 1,081건, 보호자등이 116건이었다. 2025년 1학기에는 학생이 2,000건, 보호자등이 189건이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은 2025년 1학기 기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한 행위(26.9%)가 가장 많았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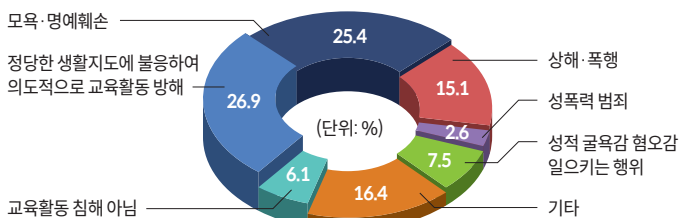
연도별 침해 현황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기준.

교원지위법 개정(시행: 2024.3.28.)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고, 피해교원 요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 시 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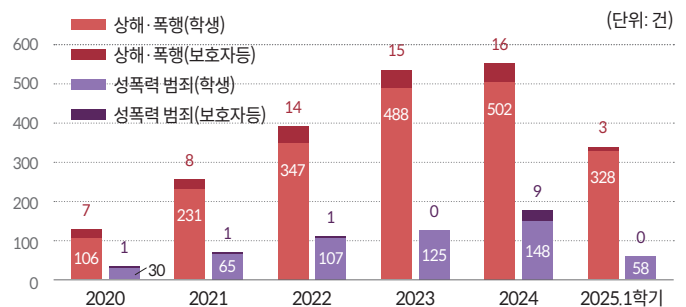
교육활동 침해유형 (2025년 1학기 기준)



※ 기타: 영상 등 무단배포, 반복적 부당 간섭, 공무·업무 방해 등 포함.

2024년부터 침해유형에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아님’이 추가됨.

침해유형 중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 추이



출처: 교육부 제출자료(20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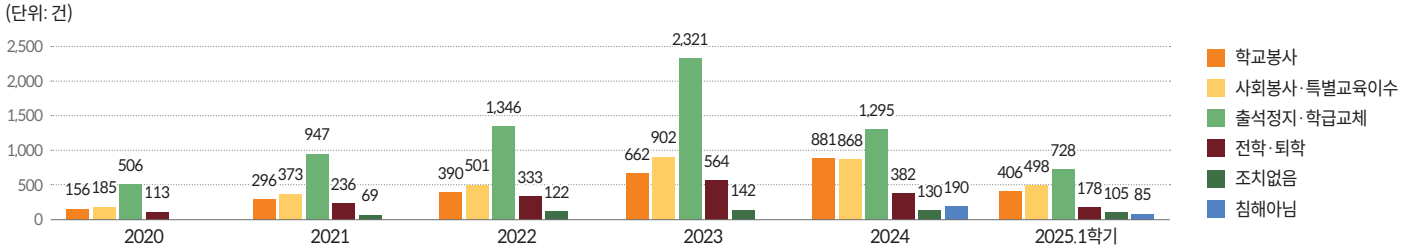
※ 『Data&Law』에 수록된 기관 제출자료는 「국회도서관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회도서관이 국가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2020년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매년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가 가장 많았다. 학생에 대한 가장 엄격한 조치인 전학·퇴학은 2020년 113건이었고, 2023년 564건으로 최고치였다. 2025년 1학기에는 178건이었다.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2025년 1학기 기준(총 189건)으로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74건이었고, '침해아님'이 48건, '조치없음'이 21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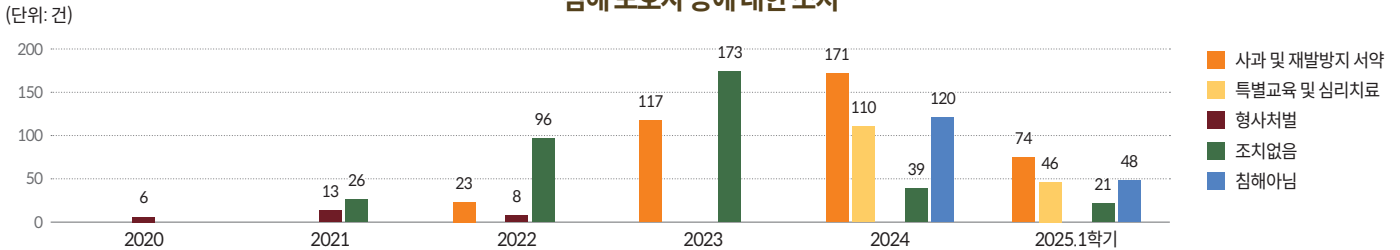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기타'(상담, 사과 및 반성문, 학급교체, 병원치료, 조치없음) 항목은 제외하고 작성됨.

※ '조치없음'은 2021학년도부터, '학급교체'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기타'에서 분리됨.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기타'(사과, 재발방지 서약, 학교장 면담, 상담, 특별교육, 경고장 발송 등) 항목은 제외하고 작성됨.

※ '조치없음'은 2021년부터,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은 2022년 2학기부터,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와 '침해 아님'은 2024년부터 '기타'에서 분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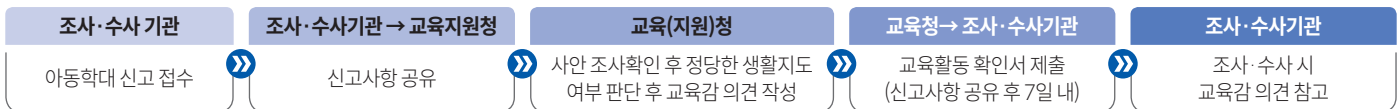
※ 2025년 조사부터 「교원지위법」에 따른 항목으로 분류함.

출처: 교육부 제출자료(2025.11.)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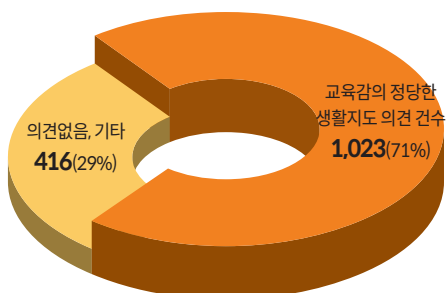
2023년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총 1,439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중 71%인 1,023건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다.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사안 중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은 674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안은 349건이다. 종료된 674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606건은 '경찰의 수사개시 전 종료'(166건)와 '검찰 불기소'(404건)로 종결되었다.

의견 제출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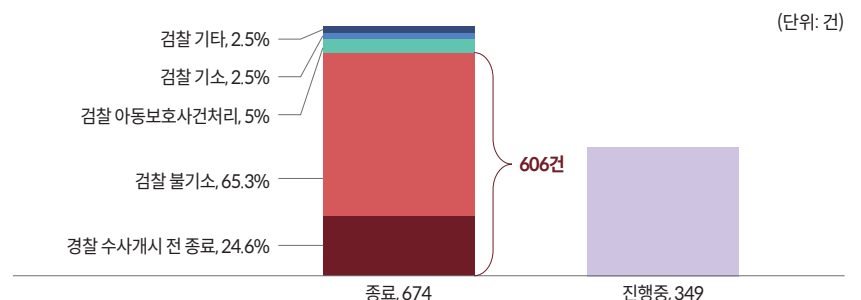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보고(2024.5.)

교육감 의견 제출 현황



기간: 2023.9.-2025.8.

교육감의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사안에 대한 경찰·검찰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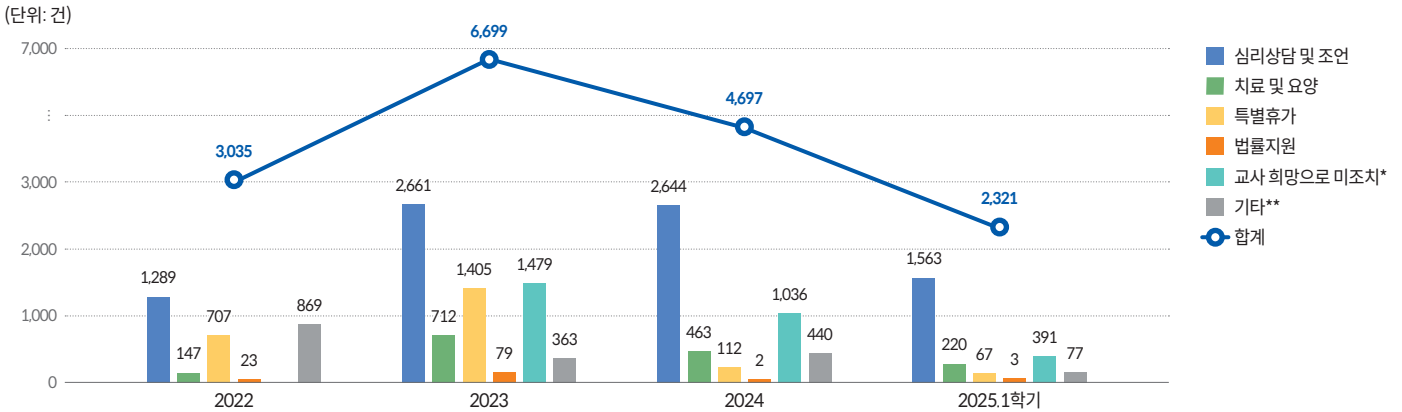
※ 경찰의 수사개시 전 종료: 불입건, 현장종결 / 검찰 불기소: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출처: 교육부 제출자료(2025.11.)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현황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된 경우,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특별휴가 등 보호조치는 2022년 3,035건 실시되었고 2023년 6,699건으로 최고치였다. 2025년 1학기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2,321건 이루어졌다. 한편, 보호조치 중 '법률지원'은 2022년 23건(0.8%), 2023년 79건(1.2%), 2024년 2건(0.04%), 2025년 1학기 3건(0.1%) 등 전반적으로 1% 이하의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보호조치 현황



* '교사 희망으로 미조치'의 경우 2022년은 '기타'에 포함됨. 미조치는 2022년 2학기부터 '기타'에서 분리하여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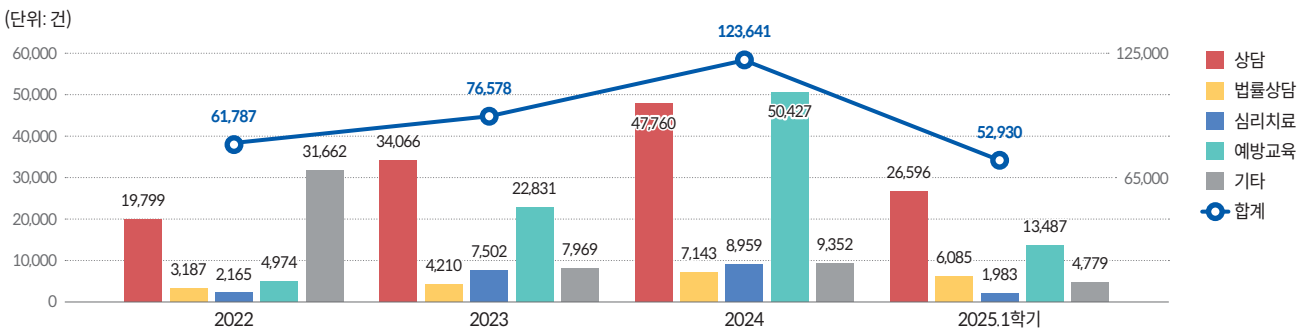
**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출처: 교육부 제출자료(2025.11.);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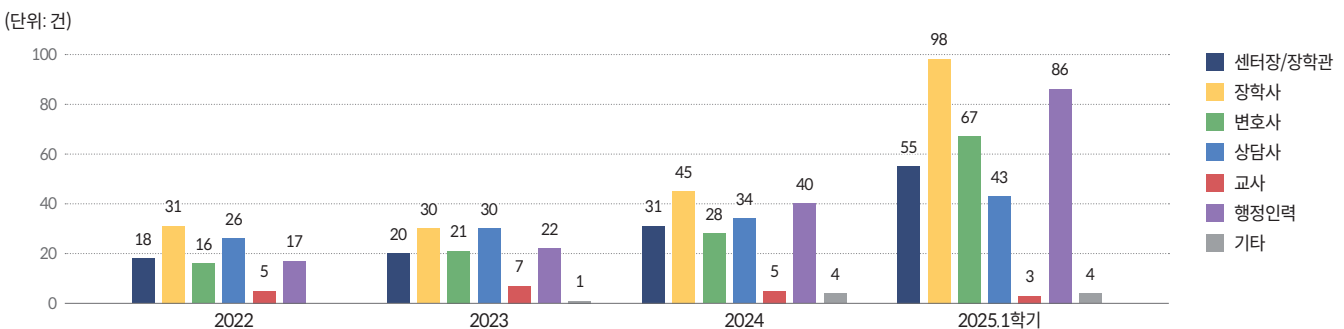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현황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 심의 종결 후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학기 기준 전국에 55개 센터가 있다. 센터의 이용건수는 2022년 약 6만 2천건에서 2024년 약 12만 4천건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 1학기 이용건수는 약 5만 3천건이며, 이 중 '상담'이 약 2만 7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상담'이 약 6천건이었다. 2025년 기준 전국 55개 센터의 상주 인력은 356명이었고, 이 중 상담사는 43명, 변호사는 67명이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현황



상주 인력 현황



출처: 교육부 제출자료(2025.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2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설 2023. 9. 27.]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8일 기준)

대표발의	주요내용
백승아 의원(2201628, 2024.07.11)	• 아동학대 사안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 마련(안 제17조제3항 신설)
강경숙 의원(2202416, 2024.07.31)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 보완(안 제20조, 제28조제4항 신설)
정준호 의원(2203446, 2024.08.30)	• 불법촬영물등에 의한 피해교원 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김민전 의원(2204981, 2024.10.29)	•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백승아 의원(2206345, 2024.12.10)	•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9조)
정성국 의원(2207712, 2025.01.22)	•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 확대(안 제19조제2호가목 및 제25조제10항) •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안 제25조제10항)
진중호 의원(2208207, 2025.02.17)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치료 비용 지원 범위 확대(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김예지 의원(2208444, 2025.02.26)	•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시책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고동진 의원(2209754, 2025.04.11)	•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죄의 가중처벌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김정재 의원(2210513, 2025.05.14)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
김미애 의원(2211140, 2025.06.27)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이준석 의원(2211405, 2025.07.10)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 마련(안 제18조, 안 제21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손해배상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김도읍 의원(2211445, 2025.07.11)	• 관할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직접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9조)
정성국 의원(2212088, 2025.08.11)	• 상해·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 마련(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정성국 의원(2213417, 2025.10.01)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안 제25조제11항 신설)
김문수 의원(2213532, 2025.10.13)	•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안 제18조제3항)
김문수 의원(2213819, 2025.10.30)	•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의 결정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Data & Law

국회도서관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문의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lawstat>),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02-6788-4766)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998-14 | ISSN 2982-6241

